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고,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·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(안 제20조제2항)

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.

나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안 별표 2)

현행 10일(다태아는 15일)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(다태아는 25일)로 확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25. ~ 2025. 1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한”을 “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,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별표 2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0일
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미숙아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

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또는 사용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복무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44